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숭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49

발의연월일: 2024. 9. 26.

발 의 자: 백승아 · 박해철 · 권향엽

황정아 • 박지혜 • 허성무

김남희 • 박홍배 • 박희승

강준현 · 조계원 · 이광희

정진욱 • 문금주 • 정준호

이기헌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오고 있음. 그러나 취업예비단계인 현장실습의 특성상 약자인 현장실습생에게 차별적이고 가혹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물리적 산업재해뿐 아니라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근무 강요, 폭언, 직장내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존재하여 현장실습생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

현재 교육부는 직업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근로관계법을 함께 위탁교육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안전교육만 의무화되어 있음. 이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노동권 보호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안 제9조의5).

법률 제 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제1항 중 "안전교육을"을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교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교육을"을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교육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①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	
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u>안전교</u>	안전교육
<u>육을</u> 실시하여야 한다.	및 노동인권교육을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2
제1항에 따른 <u>안전교육을</u> 그에	<u>안전교육 및 노동</u>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	<u>인권교육을</u>
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